

휴업(폐업) 통보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	즉시	
통보인	① 성명(대표자)			생년월일			
	주소			전화번호			
영업소	상호			전화번호			
	소재지						
	② 업종						
신고번호				신고일자			
휴업기간	년 월 일부터			년 월 일까지(일)			

③ 휴업(폐업)사유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
이
아
부

통보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작성요령

-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휴업(폐업)하려는 자(법인의 경우 대표자)의 성명을 적으십시오.
- ②란에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.
- ③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를 간단히 적으십시오.

유의 사항

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.